#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검토보고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02. 26.

행정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검토보고서

### 1. 경 과

의안 제297호로 2024년 2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서울시 관련 조례 폐지 등 시정 변화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주민 주도의 마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폐지.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4. 1. 4.~1. 24./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시 관련 조례 폐지로 우리 구(區) 마을공동체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을 잃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칙**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명시함.

###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2012.3.15.)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區)에서도 주민 주도 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련 정책으로 구현하도록 지원하여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바 있음.
- 동 조례에 따라 우리 구(區)에서 시행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연도	추진내용	비고
20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12.11.1.)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 사업 시행	
2017	- 대림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활력소 개관 (區 위탁운영)	마을활력소 조성예산 (2017~2018년) 150,000 천 원(시비)
2018	- 문래 목화마을활력소 개관 (區 직영)	마을활력소 조성예산 (2017~2018년) <b>250,000</b> 천 원(시비)
2019	- 마을자치센터(마을분야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운영 ('19.8.2.~'21.12.31.)	350,000 천 원(시비)
2022	- 마을자치센터(마을분야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재계약) 운영 ('22.1.1.~'22.12.31.)	76,000 천 원(시비) 168,925 천 원(구비)
2022.12.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시비 지원 중단
2022.12.	<ul> <li>마을자치센터(마을분야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운영종료</li> <li>구(區) 마을활력소 운영비 지원 종료</li> <li>· 대림2동 주민공동이용시설→용도변경 후</li> <li>市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 조성 및 운영('23.12.26. 개관)</li> <li>· 문래 목화마을 활력소 → 자치회관 內 대관시설로 사용</li> </ul>	
2023.02.	- 영등포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임기 만료	

- 서울시 주도하에 추진되던 마을공동체 사업이 관련 조례가 폐지된 이후 자치구 주도 사업으로 바뀌면서 서울시 예산지원이 중단되었고, 우리 구(區)에서는 마을공동체 운영 예산을 '23년부터 미편성하여 사업 실적이 없어지.
- 이와 맞물려 마을공동체 사업1) 중 마을자치센터 운영의 재위탁 기간2)과 마을활력소 운영비 지원이 종료되고, 마을공동체위원 회 임기가 만료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을 잃은 것으로 사료됨.

<sup>1) 2022</sup>년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지원(시비/구비)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구비) ▲문래동 목화마을활력소 운영비 지원(시비) ▲마을자치센터 운영(시비/구비)

<sup>2)</sup>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종료(2022.12.31.)

- 다른 한편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 정책<sup>3)</sup>을 시행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부담을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본 조례의 폐지 목적이 있다고 여겨짐.
- 다만,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가 일몰됐다고 하더라도 타 서울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sup>4)</sup>가 구(區) 사업으로 환원 후 '24년도 예산으로 편성 및 추진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sup>3) 2024</sup>년 주민자치 동 특화사업

<sup>4)</sup> 마을공동체 사업 미추진 서울시 자치구: 중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24년 기준)

#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 검토보고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02. 26.

행정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 검토보고서

### 1. 경 과

의안 제298호로 2024년 2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시정 변화에 따른 사업추진력 약화 및 협치사업 종료로 실효성을 잃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를 폐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4. 1. 4.~1. 24./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시 시정변화에 따른 협치사업 종료로 실효성을 잃은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 고자 하는 것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칙**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의 폐지를 명시함.

#### ○ 검토 결과

- 본 안건을 통해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민·관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협치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의 협치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제정(2017. 6. 1.)된 바 있음.
- 하지만, 민선8기 시정변화로 본 조례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조례가 폐지1)되고, 서울시 참여예산 유형이 단일화2)됨에 따라 자치구 단위 참여예산(구단위계획형)이 자율 운영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23년 시비 보조금이 전액 중단되었고, 구(區)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을 위한 별도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초기 우리 구(區) 민관협치 관련 사업이 '서울형

<sup>1)</sup>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폐지. '19.5.16.),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폐지. '22,12.30.)

<sup>2) 「2023</sup>년 예산편성을 위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과-22956, 2022.7.15.)에 따르면 시·구 참여예산제도 간 예산중복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존 「광역단위 사업」,「지역단위 사업」(구단위계획형) 두 가지 유형을 단일화하여 광역단위 사업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기로 함

협치'와 기조를 같이하고 있었던 만큼, 서울시 사업 일몰로 인하여 우리 구 민관협치 사업에 대한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타 서울시 자치구<sup>3)</sup>에서 유사한 조례를 폐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區)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자치사업<sup>4)</sup> 등과 같은 구민의 구정 참여를 제고하는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 는 데에서, 폐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다만,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자치사업은 민관협치 사업과는 별개 로 계속 추진하고 있던바, 민관협치 사업 종료로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가 축소된 상황인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임.

<sup>3)</sup> 광진구('23.3.2.), 강남구('23.4.14.), 종로구('23.7.21.), 동대문구('23.9.13.) 조례 폐지

<sup>4) 2024</sup>년 주민자치 동 특화사업 추진